

##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

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 제6조 제1항 제14호 및 「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」 제4조(지원대상), 제5조(지원범위), 제6조(지원조건), 제7조(지원제외), 제8조(신청접수)에 따라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

### 1. 접수 개요
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일반사업자, 환경사업자, 재활용사업자)
  - ※ 단,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,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
- 접수기간
  - (1차) 재활용산업육성자금 ·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: 2019.1.21.~1.30.
  - (2차) 환경산업육성자금 · 환경개선자금: 2019.2.21.~2.28.
  - ※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
- (접수방법) 인터넷접수(<http://loan.keiti.re.kr> \*첨부1 참조) 또는 방문접수
  - ※ 방문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및 구비서류를 저장장치(USB, CD 등)에 담아서 내원
- (구비서류) 사업자등록증, 인허가서류, 재무제표 등(세부사항 첨부2 참조)
  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가능

## 2. 용자지원 및 조건

- (지원분야)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 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 개선자금 시설분야

※ 소각장·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

- (지원규모) 총 2,408억원

<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>

(단위 : 백만원)

재활용산업육성자금		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	환경산업육성자금		환경개선자금
시설	운전		시설	운전	
58,400	70,000	4,900	23,500	22,000	62,000

- (지원조건) 분야별 최소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 까지 용자 지원

구분	분야	세부분야	대출금리	대출기간	업체당 지원한도액	
환경산업 육성자금	시설	시설설치자금	인출시점별 고정금리 (1분기 기준 1.85%)	3년거치 4년상환 (7년 이내)	30억원	
		해외시설설치자금				
	운전	성장기반자금		2년거치 3년상환 (5년 이내)	5억원	
		해외진출자금			5억원	
유통판매자금	2억원					
환경개선자금	시설	오염방지시설자금	분기별 변동금리 (1분기 기준 1.85%)	3년거치 4년상환 (7년 이내)	50억원	
		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				
재활용산업 육성자금	시설	시설설치자금		분기별 변동금리 (1분기 기준 1.85%)	3년거치 7년상환 (10년 이내)	25억원
		성장기반자금				
	운전	긴급경영안정자금	5억원			
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	시설	시설설치자금	1.85%	5년거치 10년상환 (15년 이내)	30억원	

※ 대출금리: 분기별 환경부 고시 「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」에 따라 변동

- (지원제외) **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**
- (우대조건) ①고용실적 우수(10% 이상 증가)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증액(5억원 → 10억원) ②수출실적 우수(10% 이상 증가)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증액(5억원 → 10억원)
- (한계기업)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, 자본금 등 매우 우량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경우로서 지원 제외 \*첨부3 참조

### 3. 용자심사 주요사항



- (심사기간)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
  - ※ 과다한 용자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기간 연장 가능
- 주요 심사내용
  - (심사순위 결정) 재무안전성, 사업성장성 등 기업 평가점수 및 가산점 부여 합계 점수로 결정
  - (서류심사) 신청자격,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내역 적정성 등 심사
  - (환경관계법규위반)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여부
  - (중복지원)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(추천) 여부
- ※ 운전 분야 자금 신청, 시설분야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해당기관의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지원 대상임.

- (지원제한)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기업, 다만 당해 용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용자신청 금액 부분은 용자 지원

※ '환경개선자금'과 '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'은 해당 없음




#### 4. 접수 문의

- 환경산업육성자금(시설: 02-2284-1732, 운전: 02-2284-1733)
- 환경개선자금(02-2284-1736)
- 재활용산업육성자금(시설: 02-2284-1734, 운전: 02-2284-1735)
-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(02-2284-1731)

- 첨부 1. 용자관리시스템 이용절차.  
2. 환경정책자금 신청서류.  
3. 한계기업(지원 대상 제외) 기준. 끝.

# 첨부1

# 용자관리시스템 이용절차

화면예시	절차
	<p>① 회원가입 -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</p> <p>② 공인인증서 등록 - 용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, 미등록시 접속 불가</p> <p>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 - 신청서 등록</p>
	<p>④ 정보공개활용, 초과승인 동의</p>
	<p>⑤ 신청서 작성 - 기업규모, 재무정보, 심사수위 정보, 용자신청서, 기업현황, 영업현황, 사업계획, 구비서류, 추가의견, 참여기업여부 등</p>



⑥ 구비서류 등 첨부 및 상태 확인  
- 자금별필수·선택서류 구분 및 등록



⑦ 초과승인 동의, 성실이행 준수 서약  
⑧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

## 첨부2

## 환경정책자금 신청서류

### □ 공통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1	• 사업자등록증	
2	• 법인등기부등본	• 법인사업자 필수
3	• 건물/토지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	•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
4	• 재무제표	• 최근 2개년
5	•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	• 최근년도
6	• 심사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인증서, 특허증 등)	

### □ 자금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

#### ○ 환경산업육성자금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공통	• 환경산업체 입증자료(인증서, 등록증 등)	
시설	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	
	• 건축, 설비시공, 시설공사 등 계약서	
	• 시설·장비·건축 세부도면	•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
	• 건축허가서	• 공장건물 등 신·증축인 경우
	• 현장사진	
운전	• 녹색매장 인증서	• 유통판매자금 신청자의 경우

#### ○ 환경개선자금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공통	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	
	• 건축, 설비시공, 시설공사 등 계약서	
	• 시설·장비·건축 세부도면	•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
	• 건축허가서	• 공장건물 등 신·증축인 경우
	• 현장사진	
	•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·제거등록증	
오염방지 시설	•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(단, 신규설치 시 “설치 신고 민원 접수증”)	• 수질, 대기, 소음·진동, 석면 등
	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(단, 신규설치 시 “적정 통보서”)	• 최종처리(소각장/매립장)시에는 종합재활용업허가증 제출
	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	• 폐기물감량화시설 신청 사업자의 경우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	•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	

### ○ 재활용산업육성자금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공통	•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	• 신규 창업 시 “적정 통보서”로 같음
	•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	• 창업기업의 경우 설치완료후 제출가능
	•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(자동차해체 재활용업)	• 창업기업의 경우 설치완료후 제출가능
	•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	•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자의 경우에 해당
시설	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	
	• 건축, 설비시공, 시설공사 등 계약서	
	• 시설·장비·건축 세부도면	•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
	• 건축허가서	• 공장건물 등 신·증축인 경우
	• 현장사진	

### ○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공통	•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증	
	•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증	• 지방자치단체 발급
	• 중소기업기준검토표	
	• 중소기업확인서	
	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	
	• 건축, 설비시공, 시설공사 등 계약서	
	• 시설·장비·건축 세부도면	•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
	• 현장사진	



**첨부3****한계기업(지원 대상 제외) 기준**

※ 한계기업 기준은 환경개선자금,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.

**1. 상(上)한계기업 : 모두 해당되는 경우**

구분	한계기준	산식
수익성	• 재 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직전매출 300억원 이상 지원제외	•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
재무안정성	• 자산 70억원 이상	•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
	• 부채비율 55%이하	• 부채비율 = $\frac{\text{부채총계}}{\text{자기자본}}$

**2. 하(下)한계기업 : 모두 해당되는 경우**

구분	한계기준	산식
재무안정성	•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 50%이상	• 잠식률 = $\frac{(\text{자본금} - \text{자기자본})}{\text{자본금}} \times 100$
금융비용 부담정도	•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	• $1 > \text{이자보상배율} = \frac{\text{영업이익}}{\text{금융비용}}$